



제6차 전당대회

당헌 개정 추진(안)



2025. 8. 22.(금)



당헌 개정 추진(안)

제6차 전당대회(2025. 8. 22.)

I. 의결주문

- 국민의힘 제16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함.

II. 추진(안)

-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

구분	조항	주요내용
제16차 전국 위원회 (25.05.31)	제8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	○ 대통령의 당무 관여 금지, 계파불용 명문화
	(신설)제8조의 3	

※ 별첨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I. 관련근거

- 당헌 제13조 및 제91조

[당헌 제13조(기능)]

-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.
 2. 당헌의 채택 및 개정
-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
[당헌 제91조(의결절차)]

- ① 당헌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.
-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진을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당헌

현 행	개 정 안
<p>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·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 8 조 (당과 대통령의 관계)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·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.</p> <p>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.</p> <p>③ <u>당내 선거 및 공천, 인사 등 주요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 8 조의 3(계파불용)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